

수익자총회 재소집통지서

댁내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2년 6월 19일(화) 개최된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및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자총회가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 미달로 인하여 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고자 집합투자규약 제 4장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아래와 같이 재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편 드 명 :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2. 일 시 : 2012년 7월 2일 오전 10시

3.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층 회의실 2

4. 회의목적사항

《부의 안건》

제 1호 의안 :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주된투자대상 및 유형 변경을 위한 규약 변경

5.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금번 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조 6항에 의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동봉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여 총회일 전일(2012년 7월 1일)까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번호 : 02-3783-0085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피델리티자산운용

6. 수익자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수익자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수익자총회 참석장, 위임장(위임사실 증명서류), 대리인신분증

7. 기타사항

- 수익자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문의 전화번호 : 02-3783-0999 (피델리티자산운용)

8. 첨부 : 1)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서, 2)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4)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5) 반대의사 통지서 및 매수 청구서, 6) 위임장

2012년 6월 22일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이사 마이클 리드 (직인생략)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1.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대부분의 수익자가 물리적,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수익자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 등으로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제 6 항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께서는 굳이 수익자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활용하시어 수익자의 의견이 편드의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 1) 보내드린 통지서의 수익자총회 부의 안건을 읽어 주십시오.
- 2) 의결권 표시 방법 : 아래의 표 '찬성 또는 반대'란에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찬, 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3) 수익자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 4) 수익자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를 밀봉하시어 당사(피델리티자산운용)로 수익자총회 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되어 수익자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수익자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수익자총회 의안의 투표에 반영됩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 귀중

본인은 2012년 7월 2일 개최되는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자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0 조 제 6 항에 의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수익자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유좌수		
제 1 호 의안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	찬성 반대

2012년 월 일

성명 (인)

수익자명과 성명란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제 1 호 의안 :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

당사는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의 피델리티 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주된 투자대상을 기존 해외주식에서 역외펀드인 Fidelity Funds-American Growth Fund로 변경하고, 펀드유형도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집합투자규약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한도 및 제한에 대한 적용을 규약 변경 시행일로부터 1 월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비교지수 변경, 온라인 클래스 신설 및 보수인하 등을 수익자 총회 안건과 함께 변경할 예정입니다.

변경대비표

- 모투자신탁

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된 투자대상	미국 기업의 주식	미국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Fidelity Funds-American Growth Fund)의 수익증권
펀드명	피델리티 미국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미국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유형	주식	주식-재간접형
비교지수	S&P 500 Total Return Index Hedged to KRW	S&P 500 Total Return Index 95% + Call 5%

- 자투자신탁

구분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피델리티 미국증권자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연금미국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미국증권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피델리티연금미국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유형	주식	주식-재간접형
보수	운용보수: 0.8% / 일반사무수탁보수: 0.028%	운용보수: 0.1% ^{주1)} / 일반사무수탁보수: 0.025%
환매관련 단서조항 추가	17시이전(17시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제9영업일)에 지급	17시이전(17시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제9영업일)에 지급 다만, 해외 금융기관의 연휴 등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10 영업일까지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비교지수	S&P 500 Total Return Index Hedged to KRW	S&P 500 Total Return Index 95% + Call 5%
온라인클래스 신설	-	미국자신탁 :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A-e 및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C-e 클래스 신설

주1) 피투자집합투자기구(Fidelity Funds-American Growth Fund)의 운용보수가 0.7% 수준이며, 변경 후 투자자가 부담

하는 실질적인 집합투자업자 보수는 0.8%로 구조전환 이전과 동일한 수준

참고사항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익에 대한 손실상계 조치(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 74 조)는 본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및 유형 변경 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1.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1 조에 따라 해당 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인 **2012년 5월 29일** 현재 수익자명부에 등재된 수익자로서 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소유 증권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셔야 합니다.

2. 매수청구권 행사요령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반대의사 통지** 및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가. 안건(신탁계약의 변경 등)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반대의사 통지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수익자는 총회전까지 피델리티자산운용에 ▲ 실질수익자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자, 이하 "실질수익자"라 함)는 총회일 2 영업일전(2012년 6월 28일)까지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권 행사**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승인된 경우에는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수익자에 한하여 '매수청구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수익자는 매수청구종료일(2012년 7월 22일)까지 소유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피델리티자산운용에 ▲ **실질수익자는 매수청구종료일 직전영업일 (2012년 7월 20일)까지 판매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1 조 3 항 및 동 시행령 제 222 조에 의거하여 매수가격은 **2012년 7월 25일**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매수대금은 **2012년 8월 1일**부터 거래하는 판매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4. 수익증권 매수가격의 조정신청 절차 (주의 요망)

투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탁은행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탁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매수가격이 정해짐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2 조) 별도의 매수가격 조정신청 절차는 없음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매수청구 종료일 이후에는 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실질수익자의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사무업무처리 일정에 따라 '총회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및 '수익증권 매수청구서' 제출시한 1~2일 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수익자의 '총회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제출처
 - . 자산운용회사의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피델리티자산운용
 - . 전화번호 : 02-3783-0999
 - . 팩스번호 : 02-3783-0085

(반대의사 통지서 및 매수 청구서)

총회 의결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의 총회 의결사항(안건 기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수익자번호	
소유증권수	좌
반대의사표시증권수	좌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연락전화번호 :)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이사 귀하

=====절 추 선=====

수익증권 매수 청구서

본인은 귀사의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의 총회 의결사항(안건 기재)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수청구를 청구합니다.

수익자번호	
소유증권수	좌
반대의사표시증권수	좌
매수청구 증권수	좌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 (연락전화번호 :)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이사 귀하

** 본인 참석시에는 본 위임장은 필요 없으며 대리인 참석시만 지참 바랍니다.

위 임 장

* 위임을 하는 자

수익자 성명		소유 수익증권 수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의결권있는 수익증권수	

* 위임을 받는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은 상기 _____를(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2012년 7월 2일 개최하는 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자총회에 참석하여 아래의 찬부 표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 아 래 -

의안	찬성	반대	기권
제1호			

문 월 일

위임자 수익자명
주 소

(인)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첨부)

※ 대리인 참석시 준비물

- 본 위임장에 위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위임자 날인 必
 - 수익자총회 참석장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본 준비물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익자총회 참석이 불가능합니다.